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457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남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준수(국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9. 15:5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에 화가 나, 출입문 아래 부분을 발로 차 출입문과 출입문 고정부분이 서로 어긋나게 하여 수리비 1,321,3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가면서 출입문 아래 부분을 다소 세게 발로 차는 장면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출입문과 출입문 고정 부분이 서로 어긋나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가 드는 정도의 효용이 감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손괴 내용은, 피고인이 편의점 밖을 나가면서 발로 출입문 아래 부분을 차는 행위로 인하여, 출입문과 출입문 고정부분이 서로 어긋난다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괴가 바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즉 피고인의 행위가 발생한 이후, 위 편의점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문을 닫기도 하고(15:57:54), 그 손님이 문을 열도 나가기도 하며(15:59:21), 피해자 또한 주위를 살피기 위하여 다시 문을 여는 행위를 한다(16:00:42). 또한 이후에도 다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장면 등이 확인되나, 특별히 해당 출입문에 고장이나 기타 효용을 해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모습은 육안 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피해 사진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부



터 문 사이 어긋남 정도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세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특별히 출입문에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는 장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세균이 있을 수 있는 손잡이 부분에 손이 닿는 것을 꺼려 해 발로 문을 밟는 것이라고 변소 하는데, 실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도 출입문을 발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_____